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43
----------	-------

발의연월일 : 2018. 10. 23.
발의자 : 안민석 · 노웅래 · 손혜원
고용진 · 김병욱 · 오영훈
송갑석 · 이동섭 · 박홍근
김태년 · 인재근 · 이상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2. 7. 1.)으로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나, 현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대상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권한의 위임 ·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u>특별시장</u> · <u>광역시장</u> · <u>도지사</u> · <u>특별자치도지사</u>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2조(권한의 위임 · 위탁) ----- ----- ----- ----- ----- <u>특별시장</u> · <u>광역시장</u> · <u>특별자치시장</u> · <u>도지사</u> · <u>특별자치도지사</u>----- ----- -.</p>